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5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5. 1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서만원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카드인 “백세카드”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여 사업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어르신들에게 경로우대와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를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어르신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

- 안 제8조를 신설, 지역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참여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,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○ 현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,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도 또한 다양화 되고 있으나 현실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한 실정임.

○ 현재 우리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어르신 복지카드인 “백세카드”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, 2017년 4월을 기준하여 8,704개의 카드를 발행하였으며, 음식점, 이·미용시설, 안경점 등 관내 총 446개 업소에서 참여하고 있음.

○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및 지역 효행문화 장려를 위하여 “백세카드”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,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 공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2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어르신 복지카드 '백세카드'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어르신복지카드제 운영의 근거조항 신설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4) 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 3.16. ~ 4. 5. / 20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)

- ① 구청장은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카드제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참여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,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조 ~ 제10조 (생략)</u>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<u>제9조 ~ 제11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u></p> <p><u>제8조(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)</u></p> <p>① <u>구청장은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카드제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참여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,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u></p>